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를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제39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제15항”을 “영 제69조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면세사업”을 “면세사업등”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
------	------	----------------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 락 처	(사업장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여, []부)

2. 사업장 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m ²	m ²				~	원	원

투자조합 여부	[]여 []부	투자조합 구분 (투자조합인 경우에만 해당함)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기타 개별법에 따른 투자조합 []민법에 따른 조합
---------	-----------	-----------------------------	----------------------------------------------------------------------------------

허가 등 사업 여부	[]신고 []등록 []허가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	-------------------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제조 []판매 []입장 []유통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부
----------------	----------------------------	-----------------------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	------	---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여 []부
------------------	-----------	------------------	-----------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신탁재산 여부	[]여 []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등록부상 등록지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대금결제방법”을 “대금
결제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및 제4호 중 “2025년 12월 31
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
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제2쪽부터 제4
쪽까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47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휴업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

송달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	신고(변경) 후 장소	
	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input type="checkbox"/>	2. 기타 <input type="checkbox"/> (주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업자 렌트링 서비스 신청 여부	[]여 []부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	[]여 []부
<p>※ 1. 렌트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2.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폐업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업 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p> <p>※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p>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위임장	본인은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채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합병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1.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인적사항			
법인명(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태		종목	
총괄 납부 관리번호			

2. 소멸법인 인적사항			
법인명(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태		종목	
총괄 납부 관리번호			

합병 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1.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의 (7) 매출란[(36)란부터 (39)란까지] 및 (13) 매입란[(41)란 및 (42)란]: 제1쪽 (7)란 및 (13)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2. (15)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가. (44)란 및 (45)란: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나. (46)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 앞쪽 ⑥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6서식 앞쪽 ⑥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용합니다.
 - 다. (47)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용합니다.
 - 라. (48)란: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자산 취득 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마. (49)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바. (50)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미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용합니다.
 - 사. (51)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2025년 3월 31일까지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용합니다.
3. (17)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가. (53)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 나. (54)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동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해당하는 분을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합니다.
 - 다. (55)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4. (19)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가. (57)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5,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용합니다.
 - 나. (58)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 건수 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용합니다.
 - 다. (59)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만 적되, 제1쪽 ⑥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 라. (60)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마. (61)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1. (29) 가산세액 명세란
 - 가. (64)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2)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 공급가액 합계액의 2%
 - 나. (65)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 다. (66)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 라. (67)란 및 (68)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4%,
 - 3)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마. (69)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 바. (70)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 사. (71)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72)란에 적용한다.
 - 아. (72)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 자. (73)란 및 (74)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납부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용한다.
 - 1)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 2) 그 밖의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차. (75)란 및 (76)란: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용한다.
 - 1)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 2) 그 밖의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카. (77)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율은 $\frac{22 \times (\text{경과일수})}{100,000}$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타. (78)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파. (79)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하. (80)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거. (81)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제106조의9제6항 및 제106조의11제5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램플거래계좌 및 면세점소액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너. (82)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제106조의9제7항 및 제106조의11제6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율은 지연입금액 $\times \frac{22 \times (\text{경과일수})}{100,000}$ 입니다.

 더. (83)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용한다.
2.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가. (85)란 및 (86)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나. (87)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거액은 제외함)]의 매각금액은 (84)란 또는 (85)란 중 해당 란에 기재]을 적용한다.
 - 다. (88)란: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한다.
 - 라. (89)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 마. (90)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2.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④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합계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일련 번호	과세·면세사업등 공통매입		총공급가액 등 ⑫	면세공급가액 등 ⑬	⑭ 불공제 매입세액 [(⑪×(⑬÷⑫))]
	⑩ 공급가액	⑪ 세액			
1					
2					
3					
4					
5					
합계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일련 번호	⑮ 총공통매입 세액	⑯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⑮×⑯)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⑰-⑱)
1					
2					
합계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일련 번호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㉑ 경감률[1-(5/100 또는 2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㉒×㉑×㉓)
1				
2				
합계				

작성 방법

1.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①~⑨)

-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⑨)란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으며, ③란의 자동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나. ⑥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다. ⑨ 합계란은 ①란 ~ ⑧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17)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란의 (53)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⑩~⑲)

- 가. ⑩·⑪ 과세·면세사업등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나. ⑫ 총공급가액 등란은 ⑩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 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항)
- 다. ⑬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⑩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항)
- 라. ⑭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⑩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⑬ 면세공급가액 등을 ⑫ 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⑮~⑲)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적습니다.

- 가. ⑮ 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적습니다.
- 다.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⑮ 총공통매입세액에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라.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마.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적으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적습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㉑~㉓)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가. ㉑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㉒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 다. ㉓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라. ㉔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㉑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㉒ 경감률 및 ㉓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공급 가액	④ 합계		⑤ 현금매출		⑥ 세금계산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현금매출 명세(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외)

⑦ 일련 번호	⑧ 의뢰인		⑨ 거래일	⑩ 거래금액			⑪ 세금 계산서 여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현금매출 명세(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⑫ 일련 번호	⑬ 채널이름	⑭ 채널주소 (URL)	⑮ 채널 개설일자	⑯ 금융계좌		⑰ 거래금액		
				금융회사 명	계좌번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 방법

- ① ~ ③은 제출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현금매출란에는 순수 현금매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을 적습니다.
- 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분(주민등록번호 발행 분 등)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에 따라 무가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작성대상이며, ⑩: 세금계산서 어부가 아닌 거래의 현금매출 명세(⑦~⑯)에 기재한 건수 및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적습니다.
- ⑦ ~ ⑯: 의뢰인, 거래금액 등 현금매출 명세를 적습니다. 현금매출 명세(⑦~⑯)의 건수 및 거래금액 합계는 ④의 건수 및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⑰: 현금매출 명세 작성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분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 ⑱: 후회수입 등 현금외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필지(80g/㎡)]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신고기간 :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주·총사업장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내부거래 (판매목적)		비고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과 세	()	100		과 세	()	100					
		영세율	()	100		의제등	()	100					
		과 세	()	100		과 세	()	100					
		영세율	()	100		의제등	()	100					
		과 세	()	100		과 세	()	100					
		영세율	()	100		의제등	()	100					
		과 세	()	100		과 세	()	100					
		영세율	()	100		의제등	()	100					
		과 세	()	100		과 세	()	100					
		영세율	()	100		의제등	()	100					
		합 계	()	100		과 세	()	100					
		영세율	0	100		의제등	0	100					

간이과세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신고내용

[]	간이과세 적용신고	신규 사업자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연간공급대가 예상액
		기존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 개시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결과연수
[]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신규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과세기간	년 제 기 (. . 부터)
[]	간이과세 재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년 제 기(. . 부터)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를 첨부서류(영세를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1.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① 신고내용란
 - 가. (1)란부터 (4)란까지: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 나. (5)란부터 (9)란까지: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제3쪽 (42) 합계란, (47) 합계란, (52) 합계란, (57) 합계란 및 (62)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 다. (10)란 및 (11)란: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가 없는 분은 (11)란에 적습니다.
 - 라. (12)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마. (14)란: 일반과세자료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 바. (15)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 사. (16)란: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형중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의 가액 × 2/102, 과세유형중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아. (17)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 자. (18)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 차. (19)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5,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13)란의 세액에서 (14)란부터 (18)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카. (20)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타. (21)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파. (22)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21)란의 세액과 (22)란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하. (24)란: 세액의 합계액은 (13)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거. (25)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 너. (26)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부과(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부과(신고)세액을 적습니다.
 - 더. (27)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수시부과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러. (28)란: 신고한 내용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3쪽 (81) 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4. ② 과세표준 명세란
 - 가. (30)란 및 (31)란: (13)란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나. (32)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거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고, (33)란의 합계액이 (13)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③ 면세수입금액란
 - 가. (34)란 및 (35)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나. (36)란: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6. ④ 국세환급금계좌입금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7. ⑤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8. ⑥ 영세를 상호주의란: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10)란 또는 (11)란에 영세를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 나. 적용 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공급대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5)	세금계산서 발급분 (3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4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1)
		합계 (42)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세금계산서 발급분 (4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45)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6)
		합계 (47)
숙박업	(7)	세금계산서 발급분 (4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5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1)
		합계 (52)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세금계산서 발급분 (5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55)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6)
		합계 (5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세금계산서 발급분 (5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6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61)
		합계 (62)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사업자 미등록 등		(63)	제4쪽 참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4)	1 / 100	
	미발급 등	(65)	2 / 100	
	가공발급·수취 등	(66)	4 / 100	
	미수취	(67)	5 / 1,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8)	3 / 1,000	
	미전송	(69)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70)	5 / 1,000	
	지연제출	(71)	3 / 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72)	제4쪽 참조	
	무신고(부당)	(73)	제4쪽 참조	
	과소신고(일반)	(74)	제4쪽 참조	
	과소신고(부당)	(75)	제4쪽 참조	
납부지연		(76)	제4쪽 참조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77)	5 / 1,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8)	5 / 1,0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9)	제4쪽 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80)	제4쪽 참조	
합계		(81)		

(28) 가산세액 명세

작성방법

- (38)란부터 (62)란까지: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38)란, (43)란, (48)란, (53)란 또는 (58)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은 (39)란, (44)란, (49)란, (54)란 또는 (59)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40)란, (45)란, (50)란, (55)란 또는 (6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그 밖의 매출분은 (41)란, (46)란, (51)란, (56)란 또는 (61)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각 란에 적는 금액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63)란부터 (80)란까지: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 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63)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매출액)	1/100
(64)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1/100
(65)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2/100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2/100
(66)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	4/100
(67)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	5/1,000
(68)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3/1,000
(69)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5/1,000
(70)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5/1,000
(71)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3/1,000
(72)란 및 (73)란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역외 부당 60/100)
(74)란 및 (75)란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역외 부당 60/100)
(76)란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22/100,000
(77)란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5/1,000
(78)란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79)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및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램플거래계좌 및 면세점승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80)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및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입금기한 내에 금거래계좌, 스크램플거래계좌 및 면세점승객용역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22/100,000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1. ~ 5. (생략)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서관 및 연수원

7. ~ 9. (생략)

② (생략)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

1. ~ 5. (현행과 같음)

6.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제16항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

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 면세사업등-----

-----.

② ~ ④ (현행과 같음)